

제 1780 호(그 2)
 1993. 10. 30.
 (1993.10.30자는 정호)
 (그 2로 발행됩니다.)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종
 편집인 : 공보관 김우석
 전화 : 731-6111~3
 인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 전화 : 273-8111~3

시보

차례

● 조 려

제 3035 호	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	2
제 3036 호	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	2
제 3037 호	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	3
제 3038 호	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	3
조례안입법예고		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3-275 호	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	4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새물결 새바람 희망찬 신한국”

조 **례**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3. 10. 30
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5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
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·연구·검진 및 진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(이하 "학교건강관리소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학교건강관리소에 건강관리사업의 지원과 진료를 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둔다.

제2조(위치) 학교건강관리소는 서울특별시 중로구 신문로2가 2번지 64호에 둔다.

제3조(소장) ①학교건강관리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하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.

②소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4조(진료비 등의 징수) ①학교건강관리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

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학교건강관리소의 직제 및 정원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3. 10. 30

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

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6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
수가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수가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(이하 "학교건강관리소"라 한다)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수가"라 함은 진료비·수수료·검사료 및 수술비를 말한다.

제3조(수가) ①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에 의한다.

②재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수가의 감면) 학교건강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진료비의 30%

<p>2. 학교장이 인정하는 국민학생은 진료비 전액</p> <p>3. 학교보건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검사는 검사비 전액</p> <p>4.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한 우수체육선수 신체검사 및 체육행사 의료지원시는 진료비 전액</p> <p>5.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집단 검진 및</p>	<p>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건강관리소장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</p> 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

(별 표)

제 진단서 발급 수수료

분 류	금 액(원)	비 고
가. 질병 및 병사용 진단서	1,700	이 표에 정한 진단서 발급수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.
나. 상해진단서	5,000~50,000	
다. 사체검안서	5,000	
라. 건강진단서	1,700	
마. 사망진단서	4,000	
바. 장애진단서	2,000	
사. 추가발급(1건당)	500	

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1993. 10. 30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</p> <p>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7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이 조례를 하급교육청 교육장이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육감”은 “교육장”으로 본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1993. 10. 30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</p> <p>●서울특별시조례제3038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(교육환경정화 등)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학</p>
--	--

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에서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. 다만, 학원이 위치한 건물 출입문과 영 제6 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가 위치한 건물 출입문간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입법예고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3-275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
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. 10. 30

서울특별시장

개정취지 및 주요내용

1. 개정취지

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수도수요와 환경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시립위탁시설의 급수업종 적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양수기의 명칭을 수도계량기로 변경
- 나.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.
- 다.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, 시립위탁시설(청

소년회관, 체육시설), 급수탑, 공설 소화전의 급수업종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. 11.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

다. 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(3907-321~3)로 문의